

나눔재단 및 나눔과 미래 작성 제시(안)

SH공사 제시(안) 및 확정(안)

**한국타이어나눔재단 · SH공사 · 나눔과 미래
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**

**민·관 협력형 사회주택 사업 등 활성화를 위한
SH공사-한국타이어 나눔 재단-(사)나눔과 미래
업 무 협 약 서**

한국타이어나눔재단 · SH공사 · 나눔과미래는 상호간 협력을 기초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에스에이치공사(이하“공사”라 한다)와 한국타이어 나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및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민·관 협력형 사회주택 사업 등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목적

이 협약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약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타이어나눔재단 · SH공사 · 나눔과미래 상호간의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“공사”와 “재단” 및 “법인”이 함께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 및 이를 통한 청년층 등 주거관련 사회적 약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호협력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 협력범위

본 협약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하며, 이 협약에 따른 각종 사업은 상호 협의 하에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협업을 추진한다.

제2조(상호협력의 범위)

본 협약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하고 이 협약에 의거 세부적인 추진 가능 영역은 상호 협의 하에 발굴하고 실제 사업추진 부서와 협업·추진하도록 노력한다.

나눔재단 및 나눔과 미래 작성 제시(안)

SH공사 제시(안) 및 확정(안)

제3조 협력분야

“한국타이어나눔재단” · “SH공사” · “나눔과미래”는 아래분야에서 상호 협력 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가. 한국타이어복지재단은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의 출연, 사회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한 노력에 참여한다.

나. SH공사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주택사업시행자가 동그라미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 토지임대부사회주택, 리모델링형사회주택, 맞춤형임대주택 등 다양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
다. 나눔과미래는 동그라미사회주택기금이 사회주택시행자와 SH공사간의 협력에 기반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의 관리,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.

이외에 각 기관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회주택의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.

제4조 세부사업수행

위 3조에서 정하는 사업분야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필요시 합의하여³¹³⁸¹⁶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선의협력

이 협약서의 내용에 따른 협력을 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한다.

제3조(상호협력의 분야)

① “공사”와 “재단” 및 “법인”은 아래의 분야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며 상호협력을 통하여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“공사” : 민간 사업시행자(사회적 경제주체를 포함)가 동그라미 주택기금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·협력

2. “재단” : 동그라미 주택기금의 출연 및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임대주택 확대 지원·협력

3. “법인” : 동그라미 주택기금의 효과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하여 임대주택 사업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·협력

②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“공사”와 “재단” 및 “법인”은 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함께 하여 사업 저해요인 극복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상호 노력한다.

제4조(선의성실의 원칙)

“공사”와 “재단” 및 “법인”은 사회주택 사업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관련(임대주택 건설 및 복지사업 등) 사업 협력에 있어 선의성실의

나눔재단 및 나눔과 미래 작성 제시(안)

SH공사 제시(안) 및 확정(안)

원칙에 따라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.

제6조 자료관리

이 협약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호 동의없이 본 협약서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개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한다.

제5조(자료 관리)

“공사”는“재단” 및 “법인”에 본 협약과 관련된 상호협력의 범위에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비공개 정보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
제7조 협약기간

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협약의 효력이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

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협약의 효력이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제8조 기타

가. 이 협약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시 분야별 세부약정을 별도 추진한다.
나. 각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고,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101901468313816

제7조(기타사항)

본 협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, 각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본 업무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